

뉴저지 여성목회자 합창단 회칙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뉴저지여성목회자합창단’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뉴저지한인목사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소속 여성 목사로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 및 교단간의 연합을 도모하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장 소) 본회는 뉴저지에 둔다.

제 4 조 (소속 및 협력) 본회는 뉴저지한인목사회 안에 속하며, 상호간 협력 체제로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 격) 본회는 뉴저지한인목사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소속 여성 목사로 소정의 입단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단,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 하에 객원(사역자, 전도사, 선교사 를 회원으로 들수도 있다.)

제 6 조 (의무 및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1) 회원으로서 회칙준수 및 품위유지
- (2) 입회비 및 소정의 월 회비 납부의 의무
- (3)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의 준수 의무
- (4)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의 참가권리 및 의무
- (5) 본회 내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6) 회칙의 개정 및 제반 규정에 관한 발언권 및 표결권

제 3 장 조 직

제 7 조 (임원)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들 수 있다.

- (1) 단장 1 인 (2) 부단장 1 인 (3) 총무 1 인 (4) 회계 1 인 (5) 지휘자 1 인 (6) 각 파트장 1 인
- (7) 감사 2 인

제 8 조 (임원의 선임)

- (1) 단장, 부단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총무는 회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 기타 임원은 임원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 (3) 지휘자 선임은 단장 과 임원회의 추천 으로 심의 하여 선임한다.
- (4) 각 파트장은 회원들의 추천 및 단장의 지명으로 선임한다.

제 9 조 (임원의 보선)

- (1)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 번째 임원회의 때 까지 해야 한다.
- (2) 잔여임기가 6 개월 미만인 때, 단장 결원 시 부단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여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단장이 결정한다.

제 10 조 (임 기)

- (1)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1) 단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시 의장 직무를 수행한다.
-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부재 시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단장은 각종 협력을 위한 연락 및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대원 확보 직무를 수행한다.
- (4) 총무는 단장을 보좌하여 회의, 사무, 회계, 연락 등의 책임을 지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 수행한다.
- (5) 서기가 있을시는 모든 회의와 사업의 문서를 기록 보존하며 총무를 보좌 하는 것과 총무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회계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며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단 회계가있을시)
- (7) 각 파트장은 임무 특성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며, 부단장을 보좌하여 홍보 및 대원 확보 직무를 수행한다.
- (8)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종 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된다.

제 13 조 (구 성)

-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2)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이 의장이 된다.
- (3) 본회는 임원회를 두며, 총회의 의결 사항 외의 일반 안건들은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실행한다.

제 14 조 (소 집)

- (1) 정기총회는 연 9 월 중에 소집하며, 2 주 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2)임시총회는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회원 1/4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10 일 이내에 소집하며, 7 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그 일시, 장소, 의안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성립과 의결)

(1)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 결과가 동수인 때는 재의결하며, 다시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총회에서는 미리 공지된 의안에 한해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긴급의안을 채택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 16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 및 감사 선출

(3) 결산 승인

(4) 회비책정

(5) 기타 의결사항 제 5 장 연주회 및 합창연습

제 17 조 (연주회)

(1) 정기 연주회는 필요시 년 1 회로 한다.

(2) 특별출연 및 초청연주회 참석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주회에 관련된 사항을 합창단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 일정 기간 연습을 실시하며 연습 기간에 전 회원은 동참한다.

제 18 조 (정기연습)

(1)정기 합창연습은 매주 1 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 과 임원 의 의논하 에 필요시 추가 연습을 할수도 있고 연습 횟수를 줄일수도 있다

제 6 장 사업

제 19 조 (일반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찬양을 통한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회, 교단간의 연합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교계적 사업을 수행한다.

(2) 기타 본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원회의 의결된 사업을 수행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특별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 21 조 (회비)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2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23 조 (회계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재정 운영 상황을 감사하며, 그 내용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임원회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10 일 이내에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경조금) 본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경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단, 적정한 회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실시토록 한다.)

(1) 경조금 지출 대상은 회원의 직계 경조사에 한한다.

(2) 경조금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25 조 (회칙시행) 본 회칙은 2019 년 9 월 일 창단총회로부터 시행한다.

제 26 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서 재석 투표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7 조 (발효) 본 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